

산학협력중점교원 인사규정(3-3-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산학협력중점교원(이하“산학교원”라 한다)의 자격, 임용, 평가방법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① 산학교원은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한다.

② 산학교원은 전임 산학교원과 비전임 산학교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호와 같은 직급으로 구분한다.

1. 전임 산학교원: 산학조교수, 산학부교수, 산학교수
2. 비전임 산학교원: 산학전문교수

제3조(적용) 산학교원의 인사에 관하여 특별히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자격) ① 산학교원의 자격은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② 산업체 경력인정에 대한 세부인정기준은 별첨1과 같다.

제5조(임용) ① 산학교원의 신규임용 절차는 교원인사규정 및 비전임교원인사규정의 신규임용 절차를 따르되, 반드시 제4조의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② 산학부교수 임용자 중에서 산학협력분야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경우에는 교원인사규정 제27조에 따라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정년까지 임용할 수 있다.

제6조(임기) 산학 전임교원의 임기는 교원인사규정 제6조를 따르며, 산학전문교수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대학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임무) ① 산학교원의 임무 및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학협력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운영
2. 산학협력 연구 및 기술이전
3. 창업 및 취업지원
4. 학생 현장실습 지도
5. 산학협력사업 참여 및 진행
6. 산학협력교육 등의 산학협력 사업 활동 전반

② 전임 산학교원의 강의책임시수는 주당 7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사업에서 강의 책임시간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을 준수한다.

③ 비전임 산학교원(산학전문교수)의 강의책임시수는 계약에 의한다.

제8조(평가) ① 전임 산학교원의 평가는 교원인사규정의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② 산학교원은 전조의 임무에 대하여 별도의 산학협력중점교원업적평가를 할 수 있으

며, 평가결과는 산학교원의 승진, 재임용, 연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산학협력중점교원업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재임용) ① 전임 산학교원의 재임용은 교원인사규정 제3절(재임용)의 재임용 절차에 의한다.

② 재임용 소요연수 이내에 다음 각호의 직급별로 산학협력실적물을 별첨2(재임용 및 승진임용 심사기준)의 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1. 산학 조교수 : 재임용 소요연수 이내 200% 이상의 산학협력실적 단, 최초 재임용은 소요연수 이내 100% 이상의 산학협력실적

2. 산학 부교수 : 재임용 소요연수 이내 200% 이상의 산학협력실적 단, 최초 재임용은 소요연수 이내 100% 이상의 산학협력실적 (개정2014.2.27.)

③ 교원인사위원회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해당 전임 산학교원의 재임용 소요연수 이내 직전학기까지 산학협력중점교원업적평가, 대학기여도평가, 강의평가 결과가 각각 평균 6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중 60% 미만이 있는 경우 전체평균 7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비전임 산학교원(산학전문교수)의 경우에는 전항의 사항을 준용한다.

제10조(승진임용) ① 전임 산학교원의 승진임용은 교원인사규정 제2절(승진임용)의 승진임용 절차에 의한다.

② 승진소요연수는 교원인사규정 제19조에 의한다.

③ 승진임용은 단계별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내용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단계 심사는 산학협력실적으로 심사하되, 심사기준은 별첨2(재임용 및 승진임용 심사기준)와 같다.

2. 2단계 심사는 승진 소요연수 이내의 산학협력중점교원업적평가, 대학기여도평가, 강의평가 결과가 각각 평균 7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중 70% 미만이 있는 경우 전체 평균 8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승진요건을 충족한 산학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⑤ 제1항내지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학교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하여 명백한 공헌이 인정된 자일 경우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에게 특별승진을 제청할 수 있다.

제11조(동일직급 최고 근무연한) ① 전임 산학교원이 동일직급에서 근무할 수 있는 최고 근무연한은 교원인사규정의 제20조에 따른다.

제12조(산학협력중점교수 지정) ① 산학협력단 소속의 보직교수는 산학교원으로 직무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재임기간 중으로 한다.

② 재직 중인 교원 중 산학협력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산학교원

으로 직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산학교원으로 지정된 자는 본 규정을 적용하되, 재임용 및 승진임용은 교원인사규정을 따른다.

④ 산학교원으로 직무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3조(정년보장) 산학교수로 정년까지 임용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규정 제27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14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 비전임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1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인정받은 교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 이후 신규 및 승진임용자부터 적용 한다.

산업체 경력인정에 대한 세부인정기준

1.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준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2.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3. 다음 각 항목의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 가.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 나.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5. 판사·검사로 근무한 경력
6.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변리사의 개업기간
7. 『국가기술자격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전공과목과 근무경력이 부합되고 대학 교원으로서 담당할 과목이 이에 연계될 수 있는 경우
8.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한 경력
9.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포함),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포함) 또는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포함) 졸업자의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 개업기간
10. 국가, 공공단체 또는 해당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전문의로 근무한 경력
11.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전임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12. 신학대학 졸업자가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하거나, 대학 불교학과 졸업자가 사찰에서 승려로 재직한 경력
13.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
14. 공인된 상설 예·체능 및 창작·실기에 관한 단체의 주요간부 근무경력
15. 기타 산업체 경력인정은 ‘「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의 산업체 경력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재임용 및 승진임용 심사기준

1. 재임용 기준

구분	산학 조교수	산학 부교수	
		2014.2.28.이전 임용자	2014.3.1.이후 신규 및 승진임용자
산학협력 실적기준	3년 200% (단, 최초 임용자는 2년 100%)	6년 300%	3년 200% (단, 최초 임용자는 2년 100%)

2. 승진임용 기준

구분	산학조교수→ 산학부교수	산학부교수→ 산학교수
산학협력 실적기준	500% 이상	400% 이상

3. 재임용 및 승진임용 심사기준

가. 산학협력 실적 인정기준

1) 산업체 공동연구 : 산업체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가) 심사대상 : 재임용 및 승진대상 기간 내 산업체 공동연구 수주 합산액을 말하며, 적용년도 및 수주금액은 입금일자와 입금액으로 한다.

나) 인정대상 : 연구과제책임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 연구책임자 외 참여연구원은 불인정

다) 연구과제 수주실적 환산표

계열구분	연구비 수주액 대비 산학협력실적 환산율	비 고
인문계열	100만원당 10%	
자연계열	200만원당 10%	

2) 특허 : 산학협력단 명의로 등록된 특허에 한함

가) 심사대상 : 재임용 및 승진대상 기간내 산학협력단 명의로 등록된 특허의 총 건수

나) 인정대상 : 등록 특허증에 표시된 발명자로 하되, 공동발명의 경우 직무발명신고서상의 지분을 적용한다.

다) 인정기준 : 국제특허는 1건당 200% 인정, 국내특허는 1건당 100% 인정

라) 특허 이외의 지식재산권 생성실적은 산학협력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기술이전** :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출원 또는 등록된 지식재산권이나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노하우의 양도 또는 실시권의 허락

가) 심사대상 : 재임용 및 승진대상 기간내 기술 이전료의 합산액을 말하며, 적용년도 및 기술 이전료는 입금일자와 입금액으로 한다.

나) 인정대상 : 이전된 기술의 권리자를 말하며,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기술의 경우 최초 권리자로 한다.

다) 기술이전 실적환산표

구 분	기술이전료 대비 산학협력실적 환산율	비 고
기술이전료	100만원당 15%	

4) **기술경영자문** : 산업체에 공동연구과제 이외의 방법으로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금전 및 이와 유사한 대가물을 수수하는 유상행위

가) 심사대상 : 재임용 및 승진임용기간 기간내 산업체기술경영자문 총 건수로 하며, 산학협력단에 기술경영자문 신고를 하고 1회당 자문료로 20만원 이상 산학협력단에 입금된 것에 한한다.

나) 인정대상 : 산학협력단에 기술경영자문을 신고 한 자

다) 인정기준 : 1회당 5% 인정

라) 최대인정기준 : 20%

5) 현장실습지도

“현장실습지도”란 현장실습중인 학생을 실습현장에서 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심사대상 : 재임용 및 승진임용 기간 내 현장실습지도 총건수로 하되, 단기제 또는 학기제 현장실습지도를 지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인정대상 : 현장실습지원센터에 현장실습지도를 신고 한 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후 인정을 받은 자

다) 인정기준 : 1회당 20% 인정

※ “1회”란 단기제 또는 학기제 실습기간 당 5개 업체 10명 이상을 지도한 것을 말한다. 단, 동 기간내 동일 업체 동일 학생을 대상으로 2회 이상 지도시에도 1회로 인정한다.

라) 최대인정기준 : 40%

6) 창업지도 및 창업

“창업지도 및 창업”이란 지도학생이 재학 중에 창업동아리 또는 창업교육 등을 통해 창업아이템을 개발·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창업을 한 경우 또는 본인이 창업한 경우를 말한다.

가) 심사대상 : 재임용 및 승진임용 기간 내 창업지도를 통해 지도 학생이 창업한 경우 또는 본인이 창업한 경우

나) 인정대상 : 창업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경우

다) 인정기준

(1) 학생 창업 : 1건당 20% 인정(최대 40% 인정)

(2) 교수 창업 : 100%(최대 100%)

7) 산학협력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운영

가) 심사대상 : 산학협력 관련 대학 정책사업 기획 및 운영에 직접 참여한 경우

나) 인정대상 : 재임용 및 승진임용 기간 내 대학에서 추진하는 산학협력관련 정책사업 기획 및 운영 등에 책임자 또는 참여자로 참가한 경우에 한해 산학협력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된자

다) 인정기준

(1) 책임자 : 30% 범위내에서 기여 및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적용(최대 80%)

(2) 참여자 : 20% 범위내에서 기여 및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적용(최대 50%)

나. 산학협력실적 대체 인정기준

가. 인정논문 : 한국연구재단(구.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지급 이상 논문

나. 인정환산율

구 분	인정비율	비 고
1인	100%	· 공동연구자가 4인 이상의 공동연구논문일지라도 주저자 및 교신저자일 경우 50% 인정 · SCI급 논문의 경우 인정비율×2 인정
2인	70%	
3인	50%	
4인 이상	30%	

다. 인정논문의 경우 최대 인정기준은 재임용, 승진임용 심사기준의 50%까지 인정